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운동/대한YMCA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담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6-8364) 김기석

제목: 『민주노총 출범을 앞둔 최근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민주노총출범을 앞둔 최근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세실레스토랑

1. 바른 언론을 위해 힘쓰고 계신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정부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정강정책등을 문제삼아 그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공식 표명한 바 있으며, 이적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3. 상기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에 근거한 정당한 '노동권'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하며, 민주노총 출범을 앞두고 전개되는 최근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입장과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4. 기자회견과 관련된 구체적 진행은 아래와 같으며, 회견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사 회 : 이치범(李治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 이창복(李昌馥·전국연합 상임대표)
유재현(兪在賢·경실련 사무총장)
3. 회견문 : 김중배(金重培·참여연대 공동대표)
4. 질의 및 응답

별첨자료

민주노총 출범을 앞둔 최근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견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염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공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에는 사회적 부의 분배면에서나 국민의 자유 증진이라는 면에서나 우리의 기대치에 크게 미흡하여 왔다. 정부와 국민간의 이러한 불합리와 불균형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더욱 극명하게 표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사·정의 관계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우리사회의 기본 축인 만큼 이 3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은 민족의 진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데 우리는 의견을 같이하며 민주노총 출범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제 노·사·정 합의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가 1993년 3월과 11월 그리고 1994년 6월에 한국 정부에 연속적으로 보낸 권고, 즉 공무원·교원노조의 허용, 복수노조 금지의 폐지, 노조설립의 자유화,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폐지,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권고한 것은 단순히 한 국제기구의 권고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기본적 자유와 가치를 표현한 세계 양심인의 소리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적받은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뒤집어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로부터 다시한번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보장' 및 '노동법의 독소조항 개정'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제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진정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헌장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지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조약들의 해석기관의 해석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제약하는 국내법의 규정들이 이 조약들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그러한 국내법 규정들은 특별법 또는 신법인 위 국제조약들에 위반되어 효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위 국제조약들을 성실하게 해석, 적용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당국이 이를 앞장서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이미 국제조약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국내법의 규정을 들어 민주노총의 설립을 방해하고 그 최고지도자들을 구속, 수배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이며,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존재 자체를 불법시 하는 시대착오적 대응이 남길 크나큰 후유증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 노동운동단체와의 근거없는 연관성을 빌미로 이적성을 시비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에 가까운 것으로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대응은 경제적 효과에서도 또 상호 신뢰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노사관계를 노-정관계로 변질시켜 더 큰 부담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대변할 뿐 아니라 다수 노동대중의 대변자이기도 해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노총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장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또 법치국가의 행정부로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인 민주노총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파트너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로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는데 기여하고 또 합리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수배자의 수배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속히 단행해야 한다. 특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평화로운 창립행사가 공권력의 방해 받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업들도,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이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상호 보완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자각해야 한다. 설사 국제경제의 '정글의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치열한 국제경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힘 또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기업들도 한편에서는 수백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으로 조성, 헌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억압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촉구하건대 사용자측에서도 구시대적 노동 통제방식을 버리고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지한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탄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요구를 정확히 수렴하고 성실히 대변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신생 단체로서 많은 난관에 직면할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수행하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와 개혁을 위해서 시민 사회단체와 노동조합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앞에서 밝혔듯이 노·사·정의 문제는 우리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에게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이므로 시민사회 단체에게 부과된 책무 역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후로도 정당한 노동권 확립,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착, 합리적인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1995년 1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운동/대한 YMCA 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